

집합투자기구의 해지 공고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9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공시합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구분	펀드명
1	HDC 메자닌II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2. 해지 근거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9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23조

3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 임의해지

※ 설정후 1년이 경과한 펀드로서, 지난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임의해지 함.

(근거법령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)

4. 해지일 : 2018년 3월 23일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hdcasset.com>), 판매사(대신증권, 미래에셋대우, 유안타증권, 펀드온라인코리아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